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79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김정재
권성동 · 윤한홍 · 김기현
우재준 · 추경호 · 이종배
박충권 · 김성원 · 강승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 · 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
2.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후에”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로, “사항”을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날”을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에”를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생략) <u><신설></u>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u> 1.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 2.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 <u>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u>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 ⑤ (생략)</u> <u><신설></u>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

국민근로자는 입국한 <u>후에</u>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u>사항</u>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u>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u> ----- ----- -- <u>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u>----- ----- -----.
②·③ (생략)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u>날부터</u>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 <u>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u>---.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u>제7조 제2항</u>,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7조제3항</u>----- --.
③·④ (생략)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용자가 입국 <u>전에</u>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생략) ②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u>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